

현안분석 2015-13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이 순 태

현안분석 2015-13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A 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
Yi, Sun-Tae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어업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며, 또 그 경계를 식별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점, 포획의 대상인 수산자원이 이동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유형의 해수면 이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에 따라 어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분쟁 발생
- 이러한 분쟁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적이며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정식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음
-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로서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비제도적 장치로서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등이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 및 기능,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근거가 해양수산

부훈령이라고 하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어업분쟁 중 조업구역 등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어업분쟁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절차 내지 효력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연근해어업 분쟁의 조정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주요 내용

□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 어업분쟁조정의 현황
 - 수산업법상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해양수산부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동·서해역별 어업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어업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자율관리 어업협의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 수산업법 제10장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있음
- 해양수산부 훈령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령 및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의 한계

- 수산업법상으로는 각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의 조정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어업분쟁의 양상이 시·도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 있으며, 조정위원의 구성이 분쟁조정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어서 어업분쟁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었음.
- 법률 제13384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제8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분쟁 조정)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함

□ 수산업법 시행령 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시행령 시안

- 중앙수산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종류, 구성, 사무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

○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운영세칙의 제명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안)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동·서 해역별로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며,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 제3장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어업분쟁의 실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 주제어 : 어업분쟁조정, 수산조정위원회, 어업조정위원회, 자율관리 어업 협의회, 수산업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to research

- Fisheries have different attributes to other industries since it is difficult to define or identify the spatial boundary of zones where fishing is carried out, and fishery resources, the target of fishing activities, naturally move around. In addition to such attributes, diverse disputes arise in different fields or areas of fisheries as the volume of fishery resources has decreased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 use of sea waters for new types of fishery, and the fluctuating supply and demand for marine products.
- These disputes can of course be settled through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certain proactive or alternative procedures can also be used to settle them while reducing the time consumed and costs incurred by formal court proceedings.
- These alternative system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fisheries include the following: mediation by the Fishery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Fisheries Act; a new dispute mediation procedure by the Fish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at is being newly organized based on an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for the East Sea and West Sea based on a directiv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non-institutional device consisting of autonomously controlled fishing councils.

- In fact, the Fishery Mediation Committee has not yet been operated because of incomplete provisions concerning its procedures, functions, and effects for the mediation of fishing disputes. Meanwhile,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for the East Sea and West Sea actually mediate fishing disputes. However, their scope for dispute settlement is limited as they are based on a directiv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 administrative rule lacking in statutory legality. Fishing disputes concerning problems with fishing zones involv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for which there must be grounds under an act or a subordinate statute based on delegation or entrustment by an act. In other words, the current systems for the settlement of fishing disputes have weak legal grounds and lack provisions defining the related procedures and effects.

Purpose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pose ways of improving legislation to provide a more effective procedure for the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fishing in littoral seas. In particular, it intends to examine how to define such provisions as those concerning the formation and composition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pursuant to an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II. Key detail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surrounding fishing dispute mediation

- Current status of fishing dispute mediation

- Disputes are not being mediated by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Fisheries Act. Instead, fishing disputes are actively mediated by the Fishing Dispute Medication Committee for the East Sea and West Sea, based on a directive issu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dition, fishing disputes are mediated by autonomously controlled fishing councils.

Legislation for and limitations of fishing dispute mediation and settlement

○ Legislation for the settlement of fishing disputes

- Chapter 10 of the Fisheries Act provides for the formation of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s in order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mediation of or compensation in fishing disputes. The Committees are broken down into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i or Do (City or Provinci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s, and Si, Gun, or Gu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s,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various municipalities.
-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 for the East Sea and West Sea has been formed to efficiently perform the function of fishing dispute mediation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 for the East Sea and West Sea, a directive issu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Communities engaged in “autonomously controlled fishing”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Autonomously

Controlled Fishing, a statute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fishery resources, autonomously mediate disputes between regions, fisheries, or communities.

○ Limitations of legislation for fishing dispute mediation or settlement

- Various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s are vested with the authority to mediate disput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fishing under the statutes concerning fisheries. They have certain institutional limitations, however, in that they have incomplete procedures for settling fishing disputes, and the types of fishing disputes are categorized by sea area rather than by city, province or other municipality. Further, the membe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are not specialized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 for the East and West Sea is an administrative rule, and cannot deal with issues concerning the substantive contents of fishing disputes; therefore, it can hardly secure effective mediation or settlement.

□ Organization of Fishing Dispute Committees

- An amendment bill was proposed to the Fisheries Act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ed dispute settlement functions of the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s under the Fisheries Act. The Act was amended to provid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under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in order to efficiently review disput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fishing.

-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were organized pursuant to Article 90 paragraph 6 of the Fisheries Act, partially amended under Law Bill No. 13384, to perform certain parts of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dispute mediation pursuant to Article 89 paragraph 1 subparagraphs 1 and 2). However, their precise legal nature remains unclear.
- Draft proposal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Act and Detailed Operating Rules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 Draft proposal of the Enforcement Decree
 - The Fisheries Act has been amended to organiz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under the Central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Therefore, a new provision has been added to its Enforcement Decree to define their types, configuration and secretariat. The committees are also empowered to enact detailed operational rules to cover other operational matters.
 - Draft proposal for detail the operating rules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 It is proposed that the detailed operating rules be named “Regulations (draft)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Its Chapter 2 segments their function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fishing disputes, and defines the jurisdiction and details concerning the configuration of th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for the East and West Sea. It is

further proposed that Chapter 3 define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the mediation or settlement of disputes.

III. Expected effects

- The proposal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by facilitating the efficient control of fishery resources, as it will ensure the effective mediation of fishing disputes.

➤ **Key words :** Mediation of fishing disputes, Fisheries Mediation Committee, fishing mediation committees, autonomously controlled fishing councils, Fisheries Ac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의의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8
제 2 장 어업분쟁조정 현황과 문제점	21
제 1 절 어업분쟁조정 현황	21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21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23
제 2 절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25
1.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25
2.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현행 법제의 한계	29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31
1.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발의)	31
2.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3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45
제 1 절 수산업법 시행령안	45

1. 시행령시안 신구조문대비표	45
2. 위원회 등에 두는 사무국의 입법례	53
제 2 절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71
1. 운영세칙에 관한 입법례	71
2.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안	75
참 고 문 헌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어업은 해수면이라는 공간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어업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며, 또 그 경계를 식별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점, 포획의 대상인 수산자원이 이동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유형의 해수면 이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에 따라 어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적이며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정식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로써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비제도적 장치로서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등이 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 및 기능,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근거가 해양수산부훈령이라고 하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어업분쟁 중 조업구역 등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어업분쟁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절차 내지 효력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하위법령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하위법령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해 법령상 주요한 것으로는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를 들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의 조정은 전문성을 가진 공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위원회와 같은 다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수행되고 있다.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기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지역적 어업분쟁을 조정하기에 조정자와 분쟁당사자의 관련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업분쟁의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훈령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협의회’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입법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업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수행하는 분쟁조정에 관해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한 연구범위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 중에 중앙수

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하위법령의 제개정 문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어업분쟁조정의 현황

아래에서는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현황을 통해 분쟁의 유형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표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안건>1)

번호	상정 연도	분쟁안건명(19건)	처리 구분	비고
1	2009-1	외끌이대형기저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 분과위(6회), 현장점검(12회)	조정중	
2	2009-2	경남 멸치포획 관련 어업조정 - 분과위(2회), 현장점검(10회)	조정 종결	정부건의 ‘10.9.15.
3	2009-3	외줄낚시와 연안조망 간 미끼공급 관련 어업조정 - 분과위(2회), 현장점검(6회)	조정 종결	정부건의 ‘11.5.4.
4	2010-1	권현망 울산연안 자율조업 금지구역 관련 어업조정 - 분과위(2회), 현장점검(11회)	조정 종결	정부건의 ‘12.6.28.
5	2010-2	북방어장내 자망업과 통발어업관련 어업분쟁 - 현장점검(1회)	조정 종결	분쟁소멸 ‘10.9.15.

1) 해양수산부, 어업제도개편 TF회의자료, 2013.8

제 2 장 어업분쟁조정 현황과 문제점

번호	상정 연도	분쟁안건명(19건)	처리 구분	비고
6	2010-3	잠수기어업과 거제관내 어촌계간 바지락 채포 분사기 사용 분쟁 - 분과위(3회), 현장점검(4회)	조정 종결	정부건의 '12.6.28.
7	2011-1	거제연안자망과 같은지역 낙지주낙간 조업구역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11회)	협약 체결	'12.4.26.
8	2011-2	고성,추도,사량도 연안낙지주낙과 물메기통발 간 어장선점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6회)	협약 체결	'11.9.8.
9	2011-3	기선권현망과 남해지역 연안통발 간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15회)	조정중	
10	2011-4	부산지역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간 어구 분쟁 - 분과위(1회), 현장점검(7회)	협약 체결	'11.11.8.
11	2011-5	경남 소형선망과 부산 다대지역 연안복합간 조업구역 분쟁 - 분과위(3회), 현장점검(11회)	협약 체결	'13.2.27.
12	2011-6	부산 근해통발과 경북 양포 문어통발 간 어구분쟁 - 분과위(1회), 현장점검(5회)	조정중	
13	2012-1	제주 근해자망과 경남 근해통발 간 분쟁 - 분과위(3회), 현장점검(5회)	조정중	
14	2012-2	고성, 추도, 사량도 물메기통발과 통영 연안자망 간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6회)	협약 체결	'12.11.13.

번호	상정 연도	분쟁안건명(19건)	처리 구분	비고
15	2013-1	기선권현망과 남해 앵강만 어업인 MOU 체결 - 분과위(2회), 현장점검(10회)	조정 종결	‘13.7.2.
16	2013-2	제주도 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조정 - 분과위(1회), 현장점검(8회)	조정 종결	‘13.7.2
17	2013-3	울산지역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조정 - 분과위(1회), 현장점검(3회)	조정 종결	‘13.7.2.
18	2013-4	여수 돌산지역 연안어업과 문어단지 간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4회)	협약 체결	‘13.9.24
19	2013-5	거제지역 새우조망과 문어단지 간 분쟁 - 분과위(2회), 현장점검(7회)	협약 체결	‘13.9.25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표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안건>2)

구분	추진과제 (조정안건, 13건)	현황	비고
1	충남지역 멸치관련 조업분쟁 조정 (서해위-09-01) ※ 분과위 3회, 현지조정 4회 - 조정합의안에 대한 정부건의안 제출	조정 완료 (11.11.29)	멸치분쟁 자원남획
2	제주 자리돔들망어업 조업구역 조정 (서해위-09-02) ※ 분과위 2회, 현지조정 5회	종결 처리 (10.07.14)	조업구역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2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2015.3.26 참조.

제 2 장 어업분쟁조정 현황과 문제점

구분	추진과제 (조정안건, 13건)	현 황	비고
3	진도군 새우조망 조업분쟁 조정 (서해위-10-01) ※ 분과위 1회, 현지조정 2회	조정 완료 (10.07.14)	조업구역
4	태안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서해위-10-02) ※ 분과위 2회, 현지조정 3회	조정 완료 (11.02.24)	불법어업 시비 및 어구손괴
5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1-01) ※ 분과위 1회, 현지조정 1회	조정 완료 (11.05.26)	불법어업 시비 및 어구손괴
6	태안군 연근해어선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1-03) ※ 분과위 2회, 현지조정 4회	조정 완료 (11.11.29)	조업구역
7	마을어업 포획채취 개선관련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1-04) - 2012년 초부터 본격 조정 ※ 분과위 3회, 현지조정 4회 - 어업자협약안을 참조한 정부건의안 제출	종결 처리 (13.11.01)	제도개선
8	부안군 연근해어선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2-02) - 2012년도 신규 선정과제 ※ 분과위 1회, 현지조정 2회	조정중 (12.7. 신규선정)	조업구역 어구손괴
9	서해특정해역 연안통발 허가(서해위-12-04) - 2014년 신규 선정과제 ※ 분과위 2회, 현지조정 2회	조정중 (14.2 신규선정)	조업구역
10	서해안 전어잡이 연근해선망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2-05) ※ 분과위 1회, 현지조정 4회 - 정부안(5.5km)과 동일하게 정부건의안 제출	종결 처리 (13.11.01)	조업구역

구분	추진과제 (조정안건, 13건)	현 황	비고
11	득량만 연승·통발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4-01) ※ 현지조정 7회, 어업인 협약서 체결	조정 완료 (14.3 신규선정)	조업구역
12	득량만 연승·통발 어업분쟁 조정 (서해위-14-02) ※ 현지조정 1회	조정중 (14.3 신규선정)	조업구역
13	충남 정치성 구획어업(각망) 조업구역조정 (서해위-14-03) ※ 현지조정 2회	조정중 (14.3 신규선정)	조업구역

제 2 절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1.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1) 수산조정위원회 - 수산업법 제10장

수산업법 제10장 제88조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³⁾

3) 아래 표의 수산업법 제10장은 법률 13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법률 제 13384호로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이 2015년 12월 23일로서 다음 제3장 이하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 2 장 어업분쟁조정 현황과 문제점

구 분	내 용
수산업 법	<p>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p> <p>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p>
	<p>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2011.7.25., 2012.12.1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p>5의2.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p>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삭제 <2012.12.18.> 4.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시행계획의 심의 <p>5의2.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p>

구 분	내 용
	<p>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p> <p>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삭제 <2012.12.18.>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p>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p> <p>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구 분	내 용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훈령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은 제4개장 제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자율조정협의회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어업인 “자율관리어업”⁴⁾은 그 주요활동 중 하나로 질서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질서유지 활동은 “지역간·어업간 소득격차, 분쟁 등 해결을 위하여 어장감시조 운영으로 불법어업 추방, 수산관계법령 준수, 교육 참여, 선진지 견학,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 등의 활동”⁵⁾을 내

4)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7.8.] [해양수산부훈령 제177호, 2014.7.8., 일부개정] 제2조제1호.

5)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호.

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쟁해결’이 자율관리어업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조정협의회”를 한국수산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⁶⁾

2.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현행 법제의 한계

(1) 수산업법상의 한계

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별 분쟁의 조정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어업분쟁의 양상이 시·도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운영상으로 각 수산조정위원회의가 개최되는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이 분쟁조정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⁷⁾

(2)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어업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에 관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으로서의 해양수산부훈령이다.

6)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7) 이순태,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9-10, 2009, 25-27면 참조.

제 2 장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업분쟁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행정내부적 절차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업분쟁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둔 어업분쟁의 절차 및 조정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1.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발의)

2014년 12월 30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5. 2. 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서는 현행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조정한 어업분쟁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업조정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2) 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056, 1. 대안의 경위, 1면.

제9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14년 11월 7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4년 12월 5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4년 12월 30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5. 2. 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나.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5. 4. 27.)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5. 4. 2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보도록 함(안 제 9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3) 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 생략>

제90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⑦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p>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⑥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p> <p>⑦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5) 위원회대안의 심사단계

2015년 5월 6일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음

(6) 유성엽의원안과의 비교

현 행	유성엽의원안	개 정 안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현 행	유성업의원안	개 정 안
<p>① ~ ④ (생 략)</p> <p>⑤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⑥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p>
<p><신 설></p>	<p>⑦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현행	유성업의원안	개정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비교9)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법 제88조)	시·도 (좌동)	시군자치구 (좌동)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이하 “동·서해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각각 설치·운영 (훈령 제4조)
기능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외해양식어업 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삭제 <2012.12.18.> 4. 한시어업의 허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업종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포물 관련 분쟁의 조정 3. 어선어업과 면

9) 표의 내용은 수산업법(표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장, 수산업법 시행령(표에서 “령”이라 한다),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p>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p> <p>5의2.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p> <p>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7.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p> <p>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5. 시행계획의 심의</p> <p>5의2.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p> <p>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p> <p>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5. 삭제</p> <p><2012.12.18.></p> <p>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p> <p>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p> <p>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허·신고어업간의 분쟁의 조정</p> <p>4.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 관련 분쟁의 조정</p> <p>5. 어선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p> <p>6.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p> <p>7. 그 밖에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각 호의 조정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훈령 제5조)</p>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 제90조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영 제73조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영 제73조제3항)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어업인 단체, 지자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훈령 제7조제1항)
위원장 등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법 제90조제3항)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영 제73조제2항)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영 제73조제3항)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훈령 제7조제2항) -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의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1인, 동·서해어업관리단장 각 1인 2.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어구·어법 및 자원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1인 3. 관할 광역자치단체 수산업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 분쟁 사안별로 3인 이내 4. 지자체에서 어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인 (훈령 제7조제3항)
위원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영 제73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을 포함한 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5인 이내 어업인 대표 3인 이내 어업 및 자원 관련 분야의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5인 이내 수산법규, 어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능통하고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여 어업조정 업무에 적합한 자 7인 이내 법학분야의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p>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p> <p>5.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p> <p>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영 제73조제2항)</p>	<p>사람 2명</p> <p>4.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p> <p>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p> <p>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p> <p>(영 제73조제3항)</p>	<p>인 이내</p> <p>(훈령 제7조제4항)</p>
임기	3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영 제73조제4항)	좌동	좌동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훈령 제8조)

제 3 장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명칭	중앙	시도	시군구	어업조정위원회
보조 기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 사와 서기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해양수 산부장관이 지명 (영 제73조제5항)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 사와 서기는 시·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 사가 지명 (영 제73조제5항)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 사와 서기는 시· 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 장·군수·구청장 이 지명 (영 제73조제5항)	사무국 (훈령 제15조) 전문위원 (훈령 제16조)
분야별 소 위원회	5명이내의 위원 (영 제73조제6항)	좌동	좌동	분과위원회 (훈령 제18조) - 9인 이내로 구성
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영 제78조)	좌동	좌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훈령 제31조)

(7)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률 제13384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에 따르면, 어업 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제8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분쟁 조정)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90조제7항은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어업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

이나 운영면에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는 별개의 위원회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90조제6항 후문에서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도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제 1 절 수산업법 시행령안

1. 시행령시안 신구조문대비표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은 중앙위원회, 제2항은 시도위원회, 제3항은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수산업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종류, 구성, 사무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안을 제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에는 제1항 중앙위원회, 제2항 시도위원회, 제3항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 ※ 따라서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신설·개정하여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75조 개정
제73조(수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③ (생략)	제73조(수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③ (생략)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④ 어업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에 따른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이하 “동·서해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각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설치·운영한다.</p> <p>⑤ 제4항의 각 어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인 이내 2. 어업인 대표 3인 이내 3. 어업 및 자원관련 분야의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인 이내 4. 수산법규, 어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능통하고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여 어업조정업무

현 행	개 정 안
	<p><u>에 적합한 자 7인 이내</u> 5. 법학분야의 학계·연구기관 등 의 전문가 1인 이내</p>
<p>④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u>3년</u>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u>제5항제1호부터제5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p>	<p>⑦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p>
	<p>제15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서해어업관리단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 2. 위원회 상정·심의되는 안건의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현 행	개 정 안
	<p>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p> <p>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p> <p>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p> <p>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u>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⑧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어업조정위원회에는 어업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⑩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9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74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생략>
<p>제75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u>시·군·구위원회</u>, <u>중앙합동위원회</u> 및 지역합동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5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u>시·군·구위원회</u>, <u>어업조정위원회</u>, <u>중앙합동위원회</u> 및 지역합동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6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추어야 한다.</p>	<생략>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p>※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p> <p>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어업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의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 가입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

현 행	개 정 안
<p>5.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6.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조정등을 회피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2.6.5.]</p>	<p>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6.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7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7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7조의2(위원의 추천등의 철회)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위원을 추천, 지명 또는 위촉(이하 "추천등"이라 한다)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등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등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정등과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제공받아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조정등을 하려는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조정등을 방해하는 등 공정성 	<p>※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p> <p>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분과위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

현 행	개 정 안
<p>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4. 본인이 추천등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조정등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품 등을 제공받아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p> <p>4. 관계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어업조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5. 그 밖에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7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2. 위원회 등에 두는 사무국의 입법례

위원회와 같은 자문이나 의결을 하는 기구는 행정조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원·예술원·문화원이나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적으로 개별 작용법 내에서 위원회 설치와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같이 두고 있는 것과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개별 작용법에 근거

를 두고 있으나 사무국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개별 작용법의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규정에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국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면, 주로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 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사무국장의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위원회 관련 법령에서의 사무국 규정

1) 작용법에 사무국의 근거를 두는 입법례

① 개인정보 보호법

○ 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40조

- 사무국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0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법 제7조

- 사무국 등 : 사무지원(법 제7조제8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4조),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함, 동 규정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

제50조(사무국 등)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4조의4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제16조제4항)
- 사무국 :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하위법령 위임 규정(제18조)
-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③ 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16호, 2015.1.6., 일부개정]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③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법 제8조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 소속 : 국무총리(제8조제1항)
- 위원장 : 대통령 임명 또는 위촉(제9조제2항)
- 사무국(제20조) : 사무국설치, 사무국장과 직원, 사무국장의 임명

④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간행물윤리위원회 : 법 제17조
- 사무국 :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법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설치 : 금융위원회(제3조제1항)
- 위원장 : 공동위원장(제5조제1항)
-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위촉된 날부터 계산
- 사무국 설치 :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제10조제1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조제2항)
- 사무국장 : 국장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국장의 업무(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⑥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60조부터 제69조까지
- 설치 : 한국소비자원(제60조제1항)
-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제61조제2항)

- 사무국의 설치 :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등(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8조)

⑦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법 제4조
- 사무국 설치 : 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제6조)
- 사무국 구성 : 사무국장, 존속기간(동법 시행령 제10조)

⑧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29조
- 소속 : 행정자치부장관(제29조제1항)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제29조 제3항)
- 사무국 :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 설치(제29조제8항)
- 사무국의 역할 :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등

⑨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북5도위원회 : 법 제7조
- 위원장 :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에 차례로 위원장(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
- 사무국 설치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6조제1항
- 사무국장 :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동 규정 제6조제2항) , 위원회 출석, 발언(동조 제3항)
- 사무국의 공무원 : 이북5동공무원이 겸임(제7조)

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16조
-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제16조제2항)
- 사무국 :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 설치(제16조제6항),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진행 등 사무처리(동법 시행령 제18조)

⑪ 선원법

- 선원노동위원회 : 법 제4조
- 소속 : 해양수산부장관(제4조제1항)
- 위원장 : 해양수산부장관 임명(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4제1항)
- 사무국 설치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
- 사무국 서무 : 위원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겸무(동 규정 제7조)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제37조
- 위원장 : 환경부차관(제37조제3항)
- 사무국 : 위원회의 업무지원(제37조제7항), 사무국설치(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제1항), 사무국 직원(동 규정 제7조제2항), 겸직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7조제3항), 사무국장에게 관한 규정(동 규정 제7조제4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0.3.4.]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3.4., 일부개정]

제 7 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입법구조를 취하고 있다.

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법 제4조
- 설치 : 국토교통부(제4조제1항)
- 위원장 : 대통령임명(제6조제2항)
- 사무국 : 위원회 사무처리, 사무국장, 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위임(법 제16조)

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 사무국 : 조정중재원의 사무국 설치(제14조)

⑮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진흥위원회 : 법 제4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 법 제71조
- 사무국 : 법 제20조, 제84조

2) 작용법의 근거에 따라 조직법에도 사무국 규정을 두는 경우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하는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토지보상법 제52조제2항)
- 사무기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동법 제52조제8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7조의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사무국 설치규정, 사무국장에 관한 규정, 사무국장의 업무분장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제21조제2항)
- 사무국 = 위원회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 (제21조제8항)

제17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정책의 조사 및 분석
-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6.3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타법개정]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 구성(제22조)
- 위원장의 직무(제23조)
- 사무국(제24조) : 사무국 설치 규정, 사무국장 규정, 국장의 업무분장,
- 하부조직(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보훈처장 소속(제74조의5),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74조의17)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④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각 제5장, 제6장, 제7장 :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노동위원회법 제14조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20조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
 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
 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자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
 한 자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2. 예산·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 직무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제49조)
- 국장 : 국장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제50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법 제2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에 설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사무국(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 : 위원회사무처리, 심사관 등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2.1.>

제 4 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 5 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 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2.2.1.]

제3절 조정(調停) <개정 2012.2.1.>

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 전기위원회 : 전기사업법 제53조
-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동조 제1항)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동조 제3항)
- 사무기구 : 전기위원회의 사무처리(제4항)
- 사무국 : 직제 제45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①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4.3.21.]

[대통령령 제25265호, 2014.3.21., 제정]

- 위원장 : 대통령(제3조제1항)

- 사무국 : 위원회에 사무국 설치(제10조제1항), 사무국장(제10조제2항, 제3항)

②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2) 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두는 사무국 관련 규정

1) 각종 학교에 두는 사무국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사무국장(제3장 제28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업무분장(제28조제2항)

※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 두는 사무국에 관한 규정도 동일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2) 예술원, 학술원, 문화원에 두는 사무국

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 사무국

- 예술원사무국직제 : 직무(제2조), 사무국장(제3조), 공무원의 정원(제4조), 하부조직(제5조)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 예술원사무국(제2조), 관리과(제3조), 진흥과(제4조), 공무원의 정원(제5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제6조)

② 대한민국학술원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 : 사무국
- 학술원사무국 직제 : 사무국장(제2조), 공무원의 정원(제3조), 하부

조직(제4조), 총무과(제5조), 학술진흥과(제6조), 공무원의 임용(제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9조)

③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제3항 : 사무국

제 2 절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현행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세칙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명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동·서 해역별로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며,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

1. 운영세칙에 관한 입법례

(1) 운영세칙에 관한 근거법령 및 기술방식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에서 운영세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기술방식으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장관이 정한다.” 또는 “제○항부터 제○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다.

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에 설치되는 위원회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고 하는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표 운영세칙 위임 규정의 입법례>¹⁰⁾

	위원회 등	규정대상	수립절차	결정권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한다
제 ○ 항 부 터 제 ○ 항 까 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 부 터 제8조까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위원회의 위 원이 정한다.
이 영에 규정 된 사항 외에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 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제 1 항 부 터 제5항까지에	위원회의 운 영 및 분과위			법무부장관 이 정한다.

10) 표에서 ‘위원회 등’, ‘규정대상’, ‘수립절차’,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의 (2) 입법례에서 소개하는 각 운영세칙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원회 등	규정대상	수립절차	결정권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입법례

①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¹¹⁾

- 근거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②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¹²⁾

11) [시행 2008.7.17.] [행정안전부예규 제185호, 2008.7.17., 제정]

12) [시행 2007.12.27.] [산업자원부훈령 제132호, 2007.12.27., 일부개정]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 근거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9조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¹³⁾

- 근거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④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¹⁴⁾

- 근거규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세칙¹⁵⁾

- 근거규정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

⑥ 난민위원회 운영세칙¹⁶⁾

- 근거규정 :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⑦ 농약전문위원회 운영세칙¹⁷⁾

- 근거규정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8조

⑧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¹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9조

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¹⁹⁾

- 근거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

13) [시행 2009.4.1.] [산림청훈령 제980호, 2009.3.27., 일부개정]

14) [시행 2013.10.16.] [보건복지부예규 제2013-55호, 2013.10.16., 일부개정]

15) [시행 2015.5.28.] [환경부훈령 제1153호, 2015.5.28., 일부개정]

16) [시행 2014.9.1.] [법무부훈령 제958호, 2014.8.25., 일부개정]

17) [시행 2009.12.8.]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36호, 2009.12.8., 일부개정]

18) [시행 2012.7.6.] [국무조정실지침, 2012.7.6., 일부개정]

19) [시행 2014.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8호, 2014.10.24., 일부개정]

⑩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²⁰⁾

- 근거규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⑪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²¹⁾

- 근거규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⑫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²²⁾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2.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수산업법」 제90조,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설치된 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어업 분쟁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라 함은 어선어업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및 어선어업과 면허·신고어업간의 다툼 등 어선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조정”이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0) [시행 2014.2.12.] [국토교통부훈령 제341호, 2014.2.12., 일부개정]

21) [시행 2010.1.13.] [국토해양부기타 , 2010.1.12., 제정]

22) [시행 2013.5.1.] [국토교통부훈령 제154호, 2013.5.1., 일부개정]

제 2 장 동·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 3 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업종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포물 관련 분쟁의 조정
3. 허가어업·면허어업·신고어업 사이의 분쟁의 조정
4.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관련 분쟁의 조정
5.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7.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조정에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에 어선어업과 어업권, 어촌계간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제 4 조(위원회의 관할구역 등)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18조제7항 관련, 별표3에 따른 동·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전라남도 및 제주도 관할구역은 동·서해 어업관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어업인 단체, 지자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의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1인, 동·서해어업관리단장 각 1인
2.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어구·어법 및 자원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1인
3. 관할 광역자치단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 분쟁사안별로 3인 이내
4. 지자체에서 어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인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 7 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8 조(대리참석) 제7조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서해어업관리단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상정·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거나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어업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타협·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동·서해어업관리단(사무국)은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제7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시·군·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4인 이내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요구한 어업분쟁의 검토·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원만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정·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준용)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 3 장 분쟁조정

제16조(조정 신청 및 발굴) ① 어업자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발생의 원인·일시·지역·어업·상대방 지역 및 어업
3. 분쟁의 경과
4.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어업관리단, 시·도, 시·군 및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분쟁사항을 파악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위원을 통하여 분쟁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발굴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업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할 수 있으

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해·타협 및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당사자간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자체 발굴한 어업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 어업인 또는 단체·지역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시·군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 등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원회안을 마련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 등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도, 시·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결과 등의 이행 등) ① 위원회로부터 조정·의결한 내용을 통보·건의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그 조정·의결에 따라 요

구되는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광범위한 지역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산관계법령의 제·개정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어업자협약이 유지되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의 강구 등 조정결과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2조(위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어업분쟁의 조정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민간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원회 활동 및 분쟁조정 활동에 소요되는 수당과 여비 등을 한국수산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

제 4 장 수산업법 시행령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시안

수산회는 자율조정협의 운영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 고 문 헌

I . 국내문헌

<보고서>

이순태,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9-10, 2009

<회의자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2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2015.3.26

해양수산부, 어업제도개편 TF회의자료, 2013.8